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7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서지영·김민전·이헌승

김미애 · 조정훈 · 서천호

윤상현 · 김대식 · 박충권

서명옥 · 김소희 · 정성국

나경원 · 김용태 · 곽규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.

최근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, 이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의2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081호),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08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을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"를 "시·도의 교육청 소속으로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시·도 또는시·군·구"를 "시·도"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"를 "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"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"를 "제2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"로 한다.

- ② 교육감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 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교육감과 시·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의2제2항 중 "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을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 장"을 "교육부장관 및 교육감"으로, "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 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"을 "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 회, 교육감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부장관 및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11조의2 중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2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·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2호 중 "시·도지사가"를 "교육감이"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 수·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부장관 및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 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을 "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자치시 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34조의5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지방자치 단체의 장"을 각각 "교육감(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)"으로 한다.

제34조의7제1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교육감(제34조의2에 따른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)"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본문 중 "시·도지사가"를 "교육감이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시·도지사는"을 "교육감은"으로 한다.

제41조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 부장관 및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부장과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2조의2제3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부장관 및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3조의2제1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"을 "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"을 "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 제44조의2 중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부장관 및 교육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5조의3제2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부장관 및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9조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 부장관 및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부장 관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51조 중 "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"를 "교육부장관"으로, "시·

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"을 각각 "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51조의3제1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감"으로, "거쳐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"를 "거쳐"로한다.

제56조제4항 중 "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회계연도 중일 경우 해당 일이 속하 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탁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3조(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

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」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설치 또는 교육감 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.

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·구청장과 체결한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은 이 법 에 따라 교육감과 체결한 사용계약으로 본다.
- 제4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한 고시·행정처분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대한 신청·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교육감의 행위 또는 교육감에 대한 행위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대한 신청·신고는 각각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교육감의 행위 또는 교육감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" 을 "여성가족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"으로 한다.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9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 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 전단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"을 "지방자치단체 또는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을 "지방자치단체는"으로 한다.

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"으로 한다.

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"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"을 "아동복지시설의 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"「유아교육법」에"를 "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"로 한다.

⑥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"으로

한다.

⑦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34조 중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36조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" 으로 한다.

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9조제1항 전단 중 "도지사"를 각각 "지방자치단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도지사"를 "지방자치단체"로 한다.

제326조제1항 중 "도지사"를 "도교육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7조제5항"을 "제7조제7항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책임) ①・② (생 략)	제4조(책임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 </u>
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③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	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 "시
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	•도"라 한다)의 교육감(이하
<u>같다)</u> 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	<u> "교육감"이라 한다)</u>
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	
한다.	
④·⑤ (생 략)	④・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	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
관한 각종 정책・사업・보육지	
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	
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	
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	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	시·도의 교육청 소속으로
도・특별자치도(이하 "시・도"	
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	
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	
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	
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	
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	<u>시·도</u>
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	
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	

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 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다.

② ~ ④ (생 략)
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 장 • 특별자치시장 • 도지사 • 특 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 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 터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1. ~ 8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다음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---------중앙육아종 합지원센터---------. <후단 삭제>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 교육감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 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 라 한다) 또는 시장・군수・구 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제1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 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" "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, 보육교 직원의 정서적・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

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
•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
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
치·운영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
지원센터의 경우 교육감과 시
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
청장이 공동으로 설치・운영할
<u>수 있다.</u>
④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업
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설치・
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
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
<u>있다.</u>
<u>⑤</u>
<u>제2항에 따른 지방</u>
육아종합지원센터

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· 상담 · 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.

<u>④</u> ~ <u>⑥</u> (생 략)

- 제9조의2(보호자 교육) ① (생략)
 -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 - ③ (생략)
- 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
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
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심의를 거쳐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 이경우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관한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한다.

· <u>⑥</u> ~ <u>⑧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
항까지와 같음)
제9조의2(보호자 교육) ① (현행
과 같음)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-
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
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
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
•
<u>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</u> 정책위원회, 교육감은

②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	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	
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	
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, 보	
육 관련 법인 • 단체 등에 대하	
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	
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	
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	
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	
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2(어린이집 또는 어린이	제11조의2(어린이집 또는 어린이
집용지 확보) <u>시·도지사, 시장</u>	집용지 확보) <u>교육감</u>
<u>•군수•구청장</u> 은 「도시개발	
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	
법」, 「택지개발촉진법」,	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	
률」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	
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・정	
비・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	
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	<u>.</u>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제13조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	제13조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
린이집의 설치) ① 국공립어린	린이집의 설치) ①
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	
운영하려는 자는 <u>특별자치시장</u>	교육감

- 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.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.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 하여야 한다.
- ③ ④ (생 략)
- 제15조의2(놀이터 설치) ① (생략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·벽지 등 지역 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ll15조의2(놀이터 설치) ① (현행
과 같음)
② <u>교육감</u>

제15조의3(비상재해대비시설) ①	제15조의3(비상재해대비시설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특별자</u>	②교육감
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	
<u>• 군수 • 구청장</u> 은 2009년 7월	
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	
린이집("기인가 어린이집"이라	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	
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	
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	교육감
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	
우,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
<u>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</u> 은	
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	
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	
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	
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・운	
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	
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.	
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	③
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	
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중에서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	교육감
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	
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	

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.

- 1. ~ 6. (생략)
- ④ (생략)
- 제15조의4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 ·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 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 집의 보안을 위하여 「개인정 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"폐쇄회로 텔레비전"이라 한다) 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 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
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
 받아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</u>
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 에게 신고한 경우
 - 2. (생략)
 - ② ~ ④ (생 략)
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4(폐쇄회로 텔레비전의
설치 등) ①
1
교육감
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보육교직원의 임면 등) ①	제19조(보육교직원의 임면 등) ①
<u>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</u>	교육감
<u>·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은 보육	
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	
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	
의 임면(任免)과 경력 등에 관	<u>,</u>
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	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	2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	
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	
<u>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</u>	교육감
<u>·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에게 보	
고하여야 한다.	
제21조(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	제21조(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
육교사의 자격) ① (생 략)	육교사의 자격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	Ц /
	②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	②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 1.·1의2.(생 략)	②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 1.·1의2.(생 략) 2.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	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 1.·1의2. (생 략) 2.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	②
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5조의2(부모모니터링단) ① <u>시</u>	제25조의2(부모모니터링단) ① 교
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	<u>육감</u>
<u>청장</u> 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	
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	
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, 보육	
·보건 전문가로 점검단(이하	
이 조에서 "부모모니터링단"이	
라 한다)을 구성・운영할 수	<u>.</u>
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	3
내로 구성하며 <u>시·도지사 또</u>	교육감
<u>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이 위촉	.
한다.	
④ <u>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</u>	④ 교육감
<u>·구청장</u> 은 부모모니터링단으	
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	
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	
있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	6
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	
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,	
이 경우 미리 시·도지사 또는	교육감

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의 승인을

⑦ (생략) (7) (현행과 같음)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 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 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 -----<u>교육감</u>--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. ⑨ (생략) (9) (현행과 같음) 제26조(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) 제26조(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----②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취약보 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하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26조의2(시간제보육 서비스) ① 제26조의2(시간제보육 서비스) ① (현행과 같음) (생 략) ② 교육감----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이

받아야 한다.

조에서 "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 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③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간 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~ 3. (생 략)
- ⑤ (생략)
- 제34조의5(조사·질문) ① 교육부 장관 또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 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 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,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

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</u> -
 ,
④ 교육감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(현행과 같음) 제34조의5(조사·질문) ①
<u>교육감(제34조의2에</u>
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
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
<u> 장을 말한다)</u>

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 이 확정된 자의 주거,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 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 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·지 방세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 용보험·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③ (생 략)
- ④ 교육부장관 또는 <u>지방자치</u> 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

②교육감(제
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
경우에는 시·도지사 및 시장
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)
③ (현행과 같음)
④교육감(제
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

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·질문 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·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⑤ ~ ⑦ (생 략)

제34조의7(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)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38조(보육료의 수납 등) ① 제1 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 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

경우에는 시·도지사 및 시정	<u>}</u> -
・군수・구청장을 말한다)	_
	_
	_
	_
	_
	_
	-
	_
⑤ ~ ⑦ (현행과 같음)	
제34조의7(비용 지원 신청 관련	1
정보의 고지) ①	_
교육감(제34조의2에 따른	<u>-</u>
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ㆍ5	=
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을	<u>-</u>
<u>말한다)</u>	_
	-
	-
	_
② (현행과 같음)	
제38조(보육료의 수납 등) ①	-
	_
	_
	_

를 관할하는 <u>시·도지사가</u>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수 있다. 다만, <u>시·도지사는</u>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41조(지도와 명령)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·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 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

제42조(보고와 검사) ① 교육부장 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 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<u>교육감이</u>
교육감은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41조(지도와 명령) 교육부장관
및 교육감
제42조(보고와 검사) ① 교육부장
관 또는 교육감

② (생략)

제42조의2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) ①・② (생 략)

③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제 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43조(어린이집의 폐지・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)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 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 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 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 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 수 ·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

② (생략)

제43조의2(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제43조의2(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 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

② (현행과 같음)

명령)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 육감-

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 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 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4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·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제44조의2(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)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44조의3(이행강제금) ① <u>시·도</u> 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

<u>.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교
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1. ~ 8. (현행과 같음)
제44조의2(직장어린이집 설치의
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
명령) <u>교육감</u>
·
제 <i>44</i> 주의3(이해갓제금) ① 교유간
제44조의3(이행강제금) ① <u>교육감</u>

,
② 교육감
③ 교육감
④ 교육감

-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(5)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 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 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 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⑦ (생 략)

제45조(어린이집의 폐쇄 등) ① 7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 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설치·운영자"라 한다)

⑤ 교육감
⑥ 교육감
⑦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어린이집의 폐쇄 등) ①
교육부장관 및 교육감
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 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·운영자의 관리·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·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(설치·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.

- 1. ~ 5. (생략)
- ② (생 략)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설치·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 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 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 를 받거나 조사·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.
- ④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</u><u>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은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·검
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 ③ 교육감
② (현행과 같음) ③ 교육감
② (현행과 같음) ③ 교육감
② (현행과 같음) ③ 교육감

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 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 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 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45조의2(과징금 처분) ① 교육 전 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

⑤ 교육감
⑥ (현행과 같음)
에 (한공기 필요) 세45조의2(과징금 처분) ① <u>교육</u>
부장관 또는 교육감

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45조의3(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)①(생략)
 - ② 제1항의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·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
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게 4도구 이 9 / 체 거 게 케 키 브 중 귀 이
제45조의3(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) ① (현행과 간음)
제45조의3(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) ① (현행과 같음) ②
승계) ① (현행과 같음)
승계) ① (현행과 같음)
승계) ① (현행과 같음) ②

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 할 수 있다. 제49조(청문) 교육부장관, 시·도 제49조(청문) 교육부장관 및 교육 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감-----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 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제49조의2(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제49조의2(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 등) ① -----린이집이 보유 ·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 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(이 하 이 조에서 "공시정보"라 한 다)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 -----교육감-----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 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1. ~ 6. (생 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②・③ (생략)

4	교육	-부	장관,	시	· 도	지시	}	또
는	시징	- • i	구수	• 구:	<u>청장</u>	슨	어	린
이집	의	원건	상이	해딩	ナ 정	보틭	1	공
시히	시	(٥	니히	구거니	} 7	베을	리	할
경우	- 0]	에	대힌	<u>-</u> 시	정을	권	고	하
여이	: 하	다.						

- ⑤ (생략)
- ⑥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 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9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, 처분내용, 해

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⑤ (현행과 같음)
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교육부장관 또는
교육감
제49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
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
당 어린이집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,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(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해당한다)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6 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③ <u>교육부장관</u>, 시·도지사 또 <u>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은 제1
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<u>.</u>
③ <u>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</u>

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 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 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51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지 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교육 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 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 략)
- ② <u>교육부장관</u>, 시·도지사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

④ (현행과 같음)
제51조(권한의 위임)
교육부장관
<u> </u>
<u>교육감</u>
<u>.</u>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교육
<u> 부장관 또는 교육감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
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 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51조의3(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수 있다.

②・③ (생 략)

제52조(도서・벽지・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) ① 특별자치시 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 수・구청장은 도서・벽지・농 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 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설치기준,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

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·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51조의3(관계 기관 간 업무협
조) ① 교육감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2조(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
등의 어린이집) ① 교육감

운영기	준을	적용하	가기어	립다	고
인정하	·는 경	우에는	- 제62	조에	叫
른 지	방보육	정책위	[]] 원회의	의 심	의
를 <u>거</u>	쳐 관형	할 시 •	도지	나의	승
인을	받아	이를	달리	적용	·할
수 있다	구 .				

② (생 략)

제56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<u>거쳐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56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4
교육부장
관 또는 교육감